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29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450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7. 3. 31. 선고 2016구합7057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8. 22.
판 결 선 고	2017. 8. 29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6. 5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,553,020원, 지방교육세 1,132,950원, 농어촌특별세 188,820원, 가산세 합계 1,774,160원(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1,510,600원, 납부불성실가산세 224,320원,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3,640원, 농어촌특별세 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29

부불성실가산세 5,600원)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,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'없다'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.

. 피고는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감면대상부분과 비감면대상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각 업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,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는 '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'고 명시하고 있으므로, 위 해당 부분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특정함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매출액 비율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9-29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